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동절기 안전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 까지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지난 1월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현장 가운데 95.6%(692곳)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214곳(전체의 29.6%)을 사법처리했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에 대해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조치가 미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84곳은 부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 5억 3,0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798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무엇보다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도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근로자 건강센터 10곳으로 확대 운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고 1월 14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이곳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각종 안전

보건과 관련된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 건강센터는 현재 경기 시흥 시화산업단지, 인천 남동산업단지, 광주 하남산업단지, 대구 성서산업단지, 경남 창원산업단지 등 5곳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 해에만 총 25,000여 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고용부는 내달까지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5곳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위생 전문가,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 추진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들의 오랜 숙원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년간 변동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하 안전관리비 요율)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현행 안전관리비 요율 적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요율이 결정된다.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약간 올라간 수준에서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논의와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이 약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올 상반기 말경에 정확한 요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 5억 원 미만 등 소형공사는 안전관리비 요율의 증가 폭이 크고, 50억 원 이상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증가가 소폭에 이를 전망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으로 현재 공사비 대비 2.48%인 5억 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은 기준보다 18% 정도 상향되고, 현행 1.88%인 50억 원 이상

공사의 요율은 5% 정도 오른다. 다만 고정값이 정해져 있는 5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의 요율은 공사비가 5억에 가까울 경우 18% 정도가, 50억에 가까우면 5% 정도가 기준 보다 상향된다. 또 ‘일반건설공사(을)’ 기준으로는 5억 이하 공사의 경우(2.66%) 현행 대비 10%가, 50억 이상 공사(2.02%)는 4% 정도가 오른다. 이밖에 중건설공사와 철도·궤도건설공사는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기준 보다 각각 8%, 5% 정도가 오른다. 그러나 기타 공사 중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돼 5억 미만 공사는 50%가, 50억 이상 공사는 35%가 오른다.

이번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 방안의 특징은 50억 이상 공사는 실질적으로 기준과 비교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를 담당한 조달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형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활동이 안전관리비보다는 최저가 낙찰제도, 공기 연장 등 계약 사항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74% 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사용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작성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주체에 취급사업주 외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추가 △MSDS 부실·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변경된 MSDS 제공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독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74.4%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수입업체(86.7%), 취급사업주

(74.7%), 제조업체(65.0%) 순으로 수입업체의 위반율이 다른 주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33.6%),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2.5%), MSDS를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27.0%), MSDS를 작성·제공하지 않은 경우(4.6%) 등이 많았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및 취급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차 금속업종 하청업체 안전관리체계 강화

앞으로 1차 금속업종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차 금속업종의 표준화 도급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1차 금속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감독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금속업종의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또 수급 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에게 지도·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1차 금속업종은 산업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의무를 표준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